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은 평 구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시 은평구청장 귀하

2017년 4월 26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은평구 의회로부터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7년3월28일부터 2017년4월26일까지(30일간)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은평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은평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은평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권순선 (인)

검사위원 양대석 (인)

검사위원 김세택 (인)

검사위원 배창현 (인)

【목 차】

I .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1
2) 재무제표의 결산	9
3) 성과보고서	11
4)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3

II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출결산 분야	16
2) 세입결산 분야	26
3) 재무제표 분야	28
4) 성과보고 분야	30

III .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 내용

1.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 내용	35
-----------------------	----

I . 결산검사 총괄 현황

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 =A-B)
합 계	617,737,337	646,879,945	543,467,810	103,412,135
일 반 회 계	601,348,024	629,739,253	536,081,609	93,657,644
특 별 회 계	16,389,313	17,140,692	7,386,201	9,754,491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0	16,291,701	21,120,998	500,000	6,912,759	58,586,676
일 반 회 계	0	16,291,701	21,102,272	500,000	6,851,766	48,911,905
특 별 회 계	0	0	18,726		60,993	9,674,771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6,879,945천원으로 예산액 617,737,337천원보다 29,142,608천원이 더 수납 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4%인 543,467,810천원으로 차인잔액은 103,412,135천원임.

이 중 명시이월비 16,291,701천원, 사고이월비 21,120,998천원 및 계속비 500,000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912,759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586,676천원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됨.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601,348,025	660,035,639	629,739,253	2,196,641	30,296,386
결산확인액	601,348,025	660,035,639	629,739,253	2,196,641	30,296,386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629,739,253천원은 예산현액의 104.7%로써 28,391,229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응암제2구역,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등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증가에 기인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5.4%이며 결손액은 2,196,641천원으로 시효결손이 1,851,625천원,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이 285,086천원, 무재산 29,274천원, 기타 납부능력이 없어 결손 처리한 것은 30,656천원임.

본 회계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함.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29,739,253	629,739,253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	징수 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 결정 대비 결손액
2016년	585,788,170	660,035,639	629,739,253	2,196,641	112.7	95.4	0.3
2015년	519,136,555	576,420,789	548,669,397	1,029,954	111.0	95.2	0.2
증 감	66,651,615	83,614,850	81,069,856	1,166,687			

2015회계연도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지난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누적 체납액이 징수결정액이 되었기 때문이며, 수납액은 징수활동의 강화로 전년도 548,669,397천원 보다 81,069,856천원 많은 629,739,253천원이 수납됨.

결손액은 전년도 1,029,954천원 보다 1,166,687천원이 증가된 2,196,641천원으로, 시효결손이 1,851,625천원,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이 285,086천원, 무재산 29,274천원, 기타 납부능력이 없어 결손 처리한 것은 30,656천원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01,348,025	660,035,639	629,739,253	2,196,641	30,296,386
지방세	지방세	67,414,900	71,175,020	70,079,137	57,913	1,095,883
세 외 수 입	소 계	41,863,280	80,016,723	50,816,220	2,138,728	29,200,503
	경상적 세외수입	25,385,832	27,907,301	27,881,285		26,016
	임시적 세외수입	16,477,448	52,109,422	22,934,935	2,138,728	29,174,487
지방교부세		9,156,500	10,776,248	10,776,248		
조정교부금 등		136,507,602	151,987,907	151,987,907		
보조금		300,100,714	299,774,710	299,774,71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6,305,029	46,305,031	46,305,031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1.1%인 70,079,137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50,816,220천원, 지방교부세는 1.7%인 10,776,248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151,987,907천원, 보조금은 299,774,710천원이 수납됨.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 산 액	585,788,170	601,348,025	536,081,609	37,893,973	27,372,443
결산확인액	585,788,170	601,348,025	536,081,609	37,893,973	27,372,443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585,788,170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5,559,855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01,348,025천원으로, 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15%인 907,933천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재활용정거장 신규확대 및 노후수거함 교체 추진 등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임.

이체는 예산액의 1.05%인 6,148,389천원으로써 2016.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으로 인한 것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1%에 해당하는 536,081,609천원이며 이월액은 37,893,973천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6,291,701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102,272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산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 지연 등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6%에 해당되는 27,372,443천원으로 주요사유는 지출 잔액 및 계획변경 등에 기인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36,081,609	536,081,609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회계연도 지출액	2016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금 액	비율 (%)
합 계	502,421,998	601,348,025	536,081,609	89.1	33,659,611	106.7
일반공공행정	22,486,844	33,929,849	29,935,703	88.2	7,448,859	133.1
공공질서 및 안전	1,433,686	1,545,950	1,487,520	96.2	53,834	103.8
교육	10,546,017	9,585,654	9,090,743	94.8	-1,455,274	86.2
문화및관광	23,382,966	27,205,243	17,206,149	63.2	-6,176,817	73.6
환경보호	21,640,999	30,997,556	27,730,775	89.5	6,089,776	128.1
사회복지	296,108,272	345,492,422	315,363,140	91.3	19,254,868	106.5
보건	15,341,260	17,990,038	16,320,875	90.7	979,615	106.4
농림해양수산	904,602	1,373,161	848,664	61.8	-55,938	93.8
산업·중소기업	2,708,104	4,719,043	4,372,327	92.7	1,664,223	161.5
수송및교통	4,203,385	7,205,745	5,510,557	76.5	1,307,172	131.1
국토및지역개발	3,889,302	6,065,422	5,014,981	82.7	1,125,679	128.9
예비비		6,739,558	-	0.0	0	0.0
기타	99,776,561	108,498,384	103,200,175	95.1	3,423,614	103.4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315,363,140천원, 기타 103,200,175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 19,254,868천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국토및지역개발 기능으로 전년대비 128.9%가 증가함.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6,389,313	30,744,321	17,140,693	90,201	13,603,628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903,174	1,215,269	950,372		264,89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1,718,119	1,797,418	1,797,418		
	주차장특별회계	13,497,152	27,438,624	14,118,453	90,201	13,320,171
	지하수특별회계	270,868	293,010	274,450		18,559
결산확인액		16,389,313	30,744,321	17,140,693	90,201	13,603,628
차 액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17,140,693천원은 예산액의 104.5%로써 751,380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과태료 수입 증가에 기인함.

○ 결손처분

결손처분액은 90,201천원으로 주로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검사 결과 처분사유는 적정함.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7,140,693	17,140,693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6,389,313	16,389,313	7,386,201	18,726	8,984,386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903,174	903,174	846,281	0	56,893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전기금	1,718,119	1,718,119	210,000		1,508,119
	주차장특별회계	13,497,152	13,497,152	6,266,314	18,726	7,212,112
	지하수특별회계	270,868	270,868	63,606		207,262
결산확인액		16,389,313	16,389,313	7,386,201	18,726	8,984,386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5%에 해당하는 7,386,201천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 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18,726천원으로 주차단속 장비 및 기능 보강 사업의 회계연도 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발생한 것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7,386,201	7,386,201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2. 재무제표의 결산

2016회계연도 은평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513,282	1,555,220	41,938	2.77%
Ⅰ. 유 동 자 산	108,001	159,179	51,178	47.39%
Ⅱ. 투 자 자 산	12,853	14,093	1,240	9.65%
Ⅲ. 일 반 유 형 자 산	197,818	187,725	(10,093)	5.10%
Ⅳ. 주 민 편 의 시 설	290,355	293,656	3,301	1.14%
Ⅴ. 사 회 기 반 시 설	895,147	894,990	(157)	0.02%
Ⅵ. 기 타 비 유 동 자 산	9,108	5,577	(3,531)	38.77%
부 채	33,465	23,755	(9,710)	29.02%
Ⅰ. 유 동 부 채	15,403	10,961	(4,442)	28.84%
Ⅱ. 장 기 차 입 부 채	-	-	-	-
Ⅲ.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8,062	12,794	(5,268)	29.17%
순 자 산	1,479,817	1,531,465	51,648	3.49%
Ⅰ. 고 정 순 자 산	1,386,806	1,379,810	(6,996)	0.50%
Ⅱ. 특 정 순 자 산	20,874	24,991	4,117	19.72%
Ⅲ. 일 반 순 자 산	72,137	126,664	54,527	75.59%

2016회계연도 은평구의 자산은 1조5,552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5,132억원 보다 419억원(2.77%) 증가하였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유형자산이 100억원(5.10%) 감소한 반면, 현금과 현금성자산 및 금융상품인 유동자산 512억원(47.39%)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반면, 2016회계연도 은평구의 부채는 238억원으로 전년도의 335억원 보다 97억원(29.02%) 감소하였는데, 이는 선수금과 장기예수보증금 및 우발 부채의 감소로 인해 유동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가 각각 44억원(28.84%), 53억원(29.17%)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113,785	112,227	(1,558)	1.37%
가. 사업총원가	391,386	416,186	24,800	6.34%
나. 사업수익	277,601	303,959	26,358	9.49%
II. 관리운영비	96,756	111,255	14,499	14.99%
III. 비배분비용	7,427	7,730	303	4.08%
IV. 비배분수익	4,441	19,943	15,502	349.06%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13,527	211,269	(2,258)	1.06%
VI. 일반수익	225,832	260,642	34,810	15.41%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12,305)	(49,373)	(37,068)	301.24%

은평구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162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040억원을 차감한 1,122억원이며, 총 75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노인 복지 증진’ (196)억원과 ‘친환경적인 청소관리’ (141)억원임.

또한, 2016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083억원과 기타관리운영비 2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감가상각비 51억원, 대손상각비 2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경상세외수익 16억원, 임시세외수익 170억원, 기타수익 1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6회계연도 은평구의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494)억원으로 전년도의 (123)억원 보다 371억원(301.24%)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관리운영비 145억 증가, 사업순원가 15억 감소, 일반수익의 348억원 증가 등임.

3. 성과보고서

은평구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은평구는 본 회계연도의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이라는 희망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1개)-정책사업목표(73개)-단위사업(18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함.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A/B)
계	11	73	159	112	47	70
감사담당관	1	1	2	2	0	100
민관협치담당관	1	2	4	3	1	75
홍보담당관	1	1	3	3	0	100
여성정책담당관	1	3	4	1	3	25
행정안전국	1	17	36	24	12	67
주민복지국	1	12	22	13	9	59
재정경제국	1	9	13	12	1	92
도시환경국	1	8	23	14	9	61
건설교통국	1	12	30	25	5	83
보건소	1	7	20	15	5	75
구의회사무국	1	1	2	0	2	0

은평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여성정책담당관은 25%, 구의회사무국은 2개 지표 모두 미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4.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14,741,107	6,465,755	6,968,260	14,238,602
일반회계	8,289,488	617,898	1,812,650	7,094,736
특별회계	349,010	362,306	365,276	346,0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40	-	-	5,04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43,970	362,306	365,276	341,000
기금	6,102,609	5,485,551	4,790,334	6,797,826
자활기금	70,000	111,200	141,200	4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5,672,783	5,291,373	4,540,905	6,423,251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59,826	82,978	108,229	334,575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238,602천원으로 확인됨.

(2) 채무 : 해당없음

(3) 기금

2016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출	당해연도말 현재액
		전입금	보조금	용자 회수금	예탁금 상환	이자, 기타		
합 계		3,775,776	14,000	2,391,610		10,334,035	16,515,421	18,233,985
양성평등 기 금						69,431	69,431	905,947
통합관리 기 금						327,656	327,656	6,604,273
자활기금				31,350		1,168,883	1,200,233	1,661,489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358,679	358,679	1,003,018
노인복지 기금						60,314	60,314	788,463
중소기업 육성기금				2,296,345		2,344,335	4,640,680	2,145,680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3,000,000					3,000,000	3,000,000
옥외광고 정비기금						1,265,016	1,265,016	1,367,060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3,915		275,304	339,219	780,555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62,477	562,477	2,596,012
도로굴착복 구기금						1,746,796	1,746,796	1,098,167
재난관리 기 금		775,776				1,931,915	2,707,691	2,142,301
식품진흥 기 금			14,000			550,884	564,884	745,293

검사결과 양성평등기금 등 13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233,985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3,411,317천원이 증가한 것임. 본년도 기금의 지출액은 16,515,421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함.

(4) 공유재산

2016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109,313,930	79,016,839	76,660,677	1,111,670,092
행정 재산	공공용재산	266,518,905	64,280,891	2,719,443	328,080,353
	공용재산	812,825,445	9,418,254	61,288,240	760,955,459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소 계	1,079,344,350	73,699,145	64,007,683	1,089,035,812
일반재산		29,969,580	5,317,694	12,652,994	22,634,280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356,162천원이 증가한 1,111,670,092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녹번 구립어린이집 기부채납, 과란하늘 구립어린이집 매입, 생활음악지원센터 건립 등이며 감소내용은 녹번동 86번지 구청별관 용지매각, 구립 녹번어린이집 멸실 등임.

(5)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868	93	85	876
금 액	7,634,804	322,031	497,036	7,459,799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175,005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소사유는 재물조사로 인한 매각 및 승용차 1대, 화물차 3대 등의 매각으로 발생된 것임.

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출 결산 분야

(1) 세입추계와 세출예산 편성의 합리성 제고 필요

최근 5년간 세입과 세출의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430,439	465,595	495,878	564,103	646,880	10.7
세 출(B)		371,636	421,764	458,645	508,710	543,468	10
잉여금 (A-B)	소 계	58,803	43,830	37,233	55,393	103,412	15.2
	이월금	22,893	19,947	14,395	15,502	37,913	13.4
	보조금 집행잔액	3,020	3,736	7,041	3,585	6,913	23
	순세계 잉여금	32,890	20,147	15,797	36,306	58,587	15.5

- 예산현액은 617,73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47,618백만원 보다 12.8% 증가.
-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8,912백만원, 특별회계 9,67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1.3%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 대비 10.7%에 이릅니다.
- 이월금은 명시이월비 16,292백만원, 사고이월비 21,121백만원, 계속비이월 5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4% 증가.
- 모두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훨씬 뛰어 넘는 증가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원인을 파악해 보면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 조정 교부금의 추가 교부, 예비비 집행 잔액의 증가에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2,28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미 2017회계연도 예산으로 33,427백만원이 재원으로 쓰였고 남은 25,160백만원이 추경 재원으로, 2017년 중반에 추경을 편성하면 사업은 회계연도 후반기에 추진되고 다시 반복적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이월비의 과도한 증가는 사업추진이 부진함을 의미하며 예산 편성 과정부터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무리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사고이월 뿐 아니라 명시이월의 증가 역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걱정하게 하는 대목임.

【개선 및 권고사항】

초과세입,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하나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 및 예산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예산 편성과 계획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2016회계연도 은평구의 전체(당해연도) 보조사업 예산현액은 3,715억원으로 국비 1,505억원, 시비1,506억원, 구비 704억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수령액은 3,008억원으로 국비 1,503억원, 시비 1,505억원으로 은평구 세입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사업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세출예산 신속집행 등 관리 철저

보조금 집행 결과 총 보조사업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전년도 보다 3배나(2.29%→6.29%)늘어났으며, 시비의 경우 이월액 비중은 10.7%에 달합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교부시기 지연, 사업진행의 특성(서울시 협의)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당해년도에 완료되지 못하고 미집행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음.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시설비	323,427	123,427(시비)	36,390	87,037

【개선 및 권고사항】

시비보조금이 조기에 교부되어 당해년도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이월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미간주 처리에 따른 관리 소홀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액 대비 실수령액이 감소되었음에도 감 간주 처리하지 않아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고, 보조금이 교부 되었음에도 간주처리를 하지 않아 보조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음.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수령액	집행액	잔 액
공 원 녹지과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보조사업)	308-08	12,000(국비)	8,967	9,451	-484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사업)	101-04	89,291(시비)	67,530	85,394	-18,044
	산불방지대책추진 (보조사업)	201-02	3,620(국비) 1,629(시비)	3,063 1,378	3,496 1,573	-433 -195
	산림병해충방재사업 (보조사업)	101-01	38,480(국비) 11,544(시비)	59,736 16,977	37,274 1,1182	22,462 5795

【개선 및 권고사항】

보조금을 요청한 경우 보조금의 확정, 수령액을 확인하고 간주처리를 정확히 한 후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구비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반납액 발생 최소화**
복지 관련 보조 사업의 경우 예산 추계가 어렵다보니 보조금 반납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구비 부담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고, 예탁금 계정의 정산을 고려하면 과부족이 발생하기도 함.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수령액	집행액	잔 액
여성정책 담당관	아이돌봄지원	307-10	877,678	826,746	763,181	63,565
보육지원과	어린이집운영	307-10	5,857,589	5,857,589	5,791,647	65,942

【개선 및 권고사항】

복지비의 경우 예산 추계가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는 하나 매월 혹은 분기별 보조금 정산을 통해 추경에 적절히 반영하고, 충분한 구비부담금을 확보하여 구비 부담금 부족으로 보조금 반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예산추계에 있어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금 관리 철저

청소행정과에서는 2016. 3. 31. 은평환경플랜트 관리운영비(보조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3~6월까지 4개월분으로 723,825천원을 선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이는 정산비로 사후 정산을 해야 할 사항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사후 정산비용은 634,524천원으로 89,301천원 만금이 초과 지출됨. 이 초과 지출금액은 2016. 8. 31에 7월분 정산비용을 지급하면서 차감됨.

【개선 및 권고사항】

사후에 정산하여 지출할 정산비용 4개월분을 지출 근거 없이 미리 지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은평구로서는 대금 지급 시 정산서를 근거로 지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산할 비용을 사전에 지출하였다함은 관리 감독이 소홀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금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으로 은평구는 43억에 달하는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송비용의 예비비 지출 건

청소행정과의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보상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지출이 충분히 예측 되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소송비용으로 1,631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또한 지나친 낙관에 근거한 불필요한 소송으로 소송기간 지연 이자가 1,517백만원이 지출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의 상승을 가져온 점이 인정됨.

○ 문화관광과의 국립문학관 유치를 위한 경비로 395백만원을 지출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소송비용의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하지만 담당부서와 의회 법무팀의 협치를 통해 진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패소 사유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포기 등의 결정을 통해 소송비용 지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국립문학관 유치를 위한 경비도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의 예비비 사용 지침이나 제한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 실제 집행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일부)

(단위 : 천원, %)

부서명	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
총무과	투명한 인사관리(기타직 보수)	1,160,301	985,315	174,986	15.08
총무과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1,331,298	1,146,195	185,103	13.98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959,843	779,686	180,157	18.76
교통지도과	과태료 부과 및 체납분 징수 활동	701,700	404,057	297,643	42.41
건축과	재건축공공사업지원	51,750	0	51,750	100.0
생활복지과	교육급여(보조사업)	290,222	223,391	66,831	23.12
생활복지과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 (보조사업)-전액국비	565,200	447,196	118,004	20.87
생활복지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보조사업)	262,200	166,571	95,629	36.47
보육지원과	통합보육순회지원사업	31,841	0	31,841	100.0
보육지원과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482,400	376,517	105,883	21.94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운영관리	269,666	162,710	106,956	39.66
교육복지과	친환경학교급식지원	5,449,932	5,024,548	425,384	7.8

위의 사업은 실제로 집행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일부 사례로, 어느 한 부서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면 꼭 필요한 다른 사업부서의 예산이 줄어들어 사업을 줄이거나 시행할 수 없고, 불용비율이 과대하게 높은 것은 사업을 계획만하고 실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이는 예산운영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추진의 적극성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정이 필요함.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편성 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여 다른 사업 예산에 배분하여 총체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한 지적 및 건의사항

치수과에서는 2016. 1. 28.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임하건설(주)와 체결하고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로 다음과 같이 4차에 걸쳐 계약을 체결함.(치수과)

계약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일자	계약금액	변경사유	비고
1차 원 계약	2016.01.28	545,974		
2차 변경	2016.05.11	678,630	시비 재배정	
3차 변경	2016.09.02	845,500	긴급민원접수(추경예산 확보)	
4차 변경	2016.10.21	964,760	신규 공종발생 및 물량증가 (시 긴급복구비 재배정 등)	
5차 변경	2016.12.23	1,141,470	“	

변경사유를 관련 자료에 의해 검사한 결과 3차 변경계약까지는 부당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4차, 5차 변경계약의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가 신규공종발생 및 물량증가라고 하지만 이처럼 설계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현장 상태를 사전 파악 없이 계획 단계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차에 걸쳐 신규공종이 발생하고 물량이 증가하여 설계가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당초 금액보다 209%로 증액 되었음에도 공사기간은(2016.1.29~2017.2.28) 변경이 없음.

만약 공사기간을 포함한 4, 5차 변경계약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당초 공사기간 예측이 너무 느슨하게 계획하였다고 볼 수도 있음. 따라서, 설계변경 심사와 승인절차 서류를 검사한 결과 설계변경 사유가 당초 공사추진 사유와 비슷하여 특이한 사유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됨.

【개선 및 권고사항】

은평구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한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외부 전문 감리기관이 아닌 자체감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능하다면 감리업무는 제3기관이 수행을 하도록 개선하시기를 건의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설계를 자주 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하면 정상적인 것까지도 당초의 계획 설정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음으로 너무 잦은 설계변경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

본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함에 있어, 특별회계 구성별 집행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집행률(②/①)
의료급여기금	903,174	846,281	93.7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718,119	210,000	12.22%
주차장	13,497,152	6,266,314	46.43%
지하수관리	270,868	63,606	23.48%

의료급여기금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50% 미만이며, 이 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경우에는 홍보 부족이나 지원 요건이 엄격하여 집행률이 12.22%에 불과함

【개선 및 권고사항】

특별회계의 예산을 특수한 목적에 적합한 효과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주차장 특별회계의 CCTV 교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시스템상 물품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CCTV의 폐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로 인하여 물품대장 상의 CCTV 금액 및 수량이 과대 계상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물품의 수량 및 불용자산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물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필요

2016회계연도 기금 집행 현황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용자성+비용자성) (①)	사용액(②)	집행률 (② / ①)
양성평등기금	30,000,000	13,484,080	44.9%
자활기금	37,200,000	38,744,500	104.2%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28,314,000	5,660,060	20%
노인복지기금	14,000,000	11,851,380	84.7%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000,000	2,995,000,000	99.8%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1,000,000,000	-	-
옥외광고비기금	298,000,000	287,956,300	96.6%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5,000,000	38,664,500	51.6%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99,650,000	66,464,970	66.7%
도로굴착복구기금	800,000,000	648,628,930	81.1%
재난관리기금	560,000,000	565,390,500	101%
식품진흥기금	279,200,000	119,591,000	42.8%

【개선 및 권고사항】

○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설립목적에 충실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며,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과감히 정리되어야 하고 향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 예산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적정한 예산과목 설정**

재난관리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예방사업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 구매와 관련하여 ‘시설비’의 통계목으로 50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액 대부분이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어 ‘시설비’ 보다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적절해 보입니다

○ **담당자의 잦은 변동**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업무의 이해도 및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는 결산검사 검토 의견의 반복적 내용으로 단기근무, 잦은 보직변경 및 업무 인수인계의 단절성이 없도록 해 할 것이며, 기금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지출액 대부분이 재원마련 (과태료 부과)을 위한 것으로 매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지출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건)

	2014년	2015년	2016년
과태료 부과건수	649	968	1,239

○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액 대부분이 하수도 등 유지보수공사 비용이며, 재난 관리를위한 지출액은 약 9%에 불과함. 단순히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지출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 대비 훈련 등을 위한 지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유지보수공사	재난관리를위한	합 계
지출액	512,223,000	53,167,500	565,390,500
비 율	91%	9%	100%

2. 세입 결산 분야

(1) 중복부과에 따른 부과취소

주거재생과의 주차장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후 교통지도과에서도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취소함.

※ 2016년 세입금 과오납(환불)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세목명	건수	금액	사유	비고
주거재생과	건축이행강제금	3	1,446,090	착오 부과	

【개선 및 권고사항】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부서의 이행강제금 등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행정낭비와 민원발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위반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부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사용료 착오부과에 따른 환급

도로사용료 부과 시 금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법상의 도로와 도로법상의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상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착오 부과함.

※ 2014회계연도 결산마감 후 2016년 부과취소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세목명	건수	금액	사유	비고
재무과	도로사용료	1	14,447,280	공시지가 착오 적용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국공유지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착오 부과한 사례가 있음.

※ 2016년 세입금 과오납(환불)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세목명	건수	금액	사유	비고
재무과	도로사용료	5	6,288,390	사유지 착오부과	

【개선 및 권고사항】

이와 관련하여 부과취소하고 환급금을 지불하면서 불필요한 이자까지 환급함으로써 예산낭비와 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사용료 부과 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 등에 이행강제금 부과 후 취소

○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 기계 등의 설치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추후 위법사항이 아니고 이미 관련부서(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임을 알고 부과 취소한 사례가 있음.

○ 시정완료 및 원상 복구한 사항

개발제한구역에 썬라이트 또는 증축을 위한 패널/벽돌 설치에 대해 부과 되었던 이행강제금이 시정을 완료하거나 원상복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이 있음.

※ 2015회계연도 결산마감 후 부과취소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세목명	건수	금액	사유	비고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이행 강제금	9	19,897,130	행정기관착오	

【개선 및 권고사항】

위와 같은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한편으로 전임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반성과 노력으로 재정 상황이 튼튼해 질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무제표 결산 분야

(1) 공유재산 관련 프로그램의 연계 시스템 필요

e호조 시스템 상 공유재산 금액과 공유재산 프로그램의 합계액이 공유재산의 이관시점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불일치함.

(단위 : 백만원)

e호조 시스템상 공유재산	공유재산프로그램	차액
1,117,333	1,111,670	5,663

【개선 및 권고사항】

e호조 상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해당 자산가액이 새울행정시스템 공유재산 현황에 정확하게 계상되는지 관리 및 통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정확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물품대장의 효율적인 관리

e호조 상 일괄적으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 새울행정시스템상 물품대장에 건별로 등록하지 않고 일괄등록 함에 따라, 개별 물품의 관리가 불가능하여 정확한 재물조사 및 매각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개선 및 권고사항】

물품대장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의 물품담당자에게 업무메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물품대장의 일관성 있는 계정처리 및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형자산의 정확한 물품 등재

○ 유형자산의 세부 유형분류를 잘못된 사례

(단위 : 천원)

회계명	자산명	수량	금액
일반 회계	동주민센터 정보통신장비	4	15,708
“	방법용 CCTV	6	55,124
“	백본스위치	2	90,701
“	네트워크스위치	5	12,650

회 계 명	자산명	수 량	금 액
“	음압에어텐트	2	30,295
“	냉난방기	2	2,977
“	감염진료실장비	1	6,100
“	휴대용연무소독기	9	5,670
“	방역소독기	2	1,879
“	무선마이크장치	1	497
“	비디오프로젝트	1	1,493
“	방역장비(동력분무기)	1	2,400
“	미술품	1	3,000
“	무단투기감시카메라	2	3,800
“	응암지소 의료장비	1	89,700
“	레이저프린트	1	552
“	디지털카메라	1	810
“	노트북	1	1,427
“	무선랜 AP	5	4,172
“	경로당텔레비전	3	2,640
“	컴퓨터	4	4,133
“	컴퓨터모니터	2	458
“	텔레비전	1	1,055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40	7,800
“	보안용 카메라	2	438,900
“	원격지 백업시스템	1	235,200
“	네비게이션	1	319
“	재난관측기	2	187,004
식품진흥기금	어린이보호구역안내걸이구	1	2,742
“	안내표지판	103	19,639
광고물정비기금	단층현수막게시대	1	3,230
“	계		1,232,075

【개선 및 권고사항】

위 현황의 유형자산 들을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계, 기구, 장비 등 동산은 물품으로 분류하고 물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대장에 등재된 유형자산은 정기재물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재물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물품으로 분류하여 물품대장에 등재하였는지의 여부는 재물조사 여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4. 성과보고서 분야

은평 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 하였으며,

2016회계연도의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와 ‘성과보고서’ 에 ‘비전-전략목표(11개)-정책사업목표(68개)-단위사업(182개)’ 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같이 설정하였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부 서 명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A/B)
계	11	73	159	112	47	70
감사담당관	1	1	2	2	0	100
민관협치담당관	1	2	4	3	1	75
홍보담당관	1	1	3	3	0	100
여성정책담당관	1	3	4	1	3	25
행정안전국	1	17	36	24	12	67
주민복지국	1	12	22	13	9	59
재정경제국	1	9	13	12	1	92
도시환경국	1	8	23	14	9	61
건설교통국	1	12	30	25	5	83
보건소	1	7	20	15	5	75
구의회사무국	1	1	2	0	2	0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여성정책담당관은 25%, 주민복지국은 59%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의회사무국은 지표수 2개 모두 미달성의 결과를 나타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로 확인되었고,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성과지표의 문제

- ① 성과보고서는 정책단위 별로 구성되어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지표 자체가 추상적이고 측정이 어렵도록 설정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들이 많음.

(사례1)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자치안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참여 활성화	깨끗하고 쾌적한 동청사 관리
복지정책과	보훈문화 조성 및 지원을 통한 보훈복지 실현	보훈문화 조성(원)
교육복지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지원
일자리정책과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생활경제과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로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거취양가구 복지정보지 제공
사회적경제과	서민금융 안정지원	서민금융안정지원

- ② 또한 정책사업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다보니 중요한 단위사업을 빠뜨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혹은 예산 비중이 작은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사례들도 있음.

(사례2)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예산액 (천원)	예산 비중(%)
주 거 재생과	구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도시 환경기반 구축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전점검	14,860	2.3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공모사업	20,000	3.1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500	0.08

- ③ 성과 측정 방법의 경우 추진율, 처리율 등의 수량적 방법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률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음.

(사례3)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달성 성과
자 치 안전과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	예산집행률	100%	미달성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집행률	100%	미달성
		주민자치사업 지원	예산집행률	100%	미달성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율	100%	미달성

【개선 및 권고사항】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단위사업 모두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거나 예산 비중이 작은 단위사업을 성과지표로 하기보다 예산비중이 크고 중요성이 높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수량적 방법 뿐 아니라 단위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의 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예산의 집행 결과 사업의 결과나 서비스의 만족도 등으로 측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목표치 설정의 문제 - 성과 계획서의 적정성

성과계획서는 향후 성과보고서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서 목표 달성 체크와 향후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일부 부서의 경우 수년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목표 달성 노력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남.

(사례4)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14	'15	'16	'17
교통지도과	도시교통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확보율	120%	120%	120%	120%
			2,250 건	2,250 건	2,250 건	2,250 건
건축과	안전하고매력있는 도시조성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2,250 건	2,250 건	2,250 건	2,250 건

【개선 및 권고사항】

성과계획서가 지난 년도 성과계획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반영해서 작성되어야 하고 현실적이고도 달성 가능한 목표치 설정을 통해 단위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의 변경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적절한 조응

- 성과계획 수립 이후 부서의 개편이나 사업의 분화로 인해 단위 사업이 변경되어 당초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가 불일치하는 사례들이 있음.

(사례5) 성과지표의 변동

실국명	성과계획						변동사유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개수		지표수		개수		
	계	보	계	보	계	보	
	획	고	획	고	획	고	
감사담당관	1	1	2	2	3	2	- 안전도시 만들기 지원(단위사업)이 치수과 단위사업으로 이전
민관협치담당관	1	2	5	4	4	5	- 공유 활성화(단위사업)가 자치안전과로 이전 - 창의비전지원(단위사업)이 기획예산과로 이전 - 교육복지과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정책사업목표)이 민관협치담당관으로 이전

실 국 명	성과계획						변 동 사 유
	정책사업목표				단위		
	개수		지표수		사업수		
	계 획	보 고	계 획	보 고	계 획	보 고	
여성정책담당관	1	3	2	4	3	6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한부모가족...(정책사업목표) 및 다문화가족의...(정책사업목표)이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이전. 단위사업도 같은 이유로 증가됨
기획예산과	2	2	6	7	5	6	- 민관협치담당관 창의비전(단위사업)이 기획예산과 이전
자치안전과	4	5	10	12	9	11	- 여성정책담당관의 사랑의 김장나누기, 구민 알뜰장 사업이 자치안전과로 이전되면서 신규 정책사업목표 생성
장애인복지과	4	1	4	1	6	2	-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정책사업목표) 민관협치담당관으로 이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정책사업목표), 다문화가족의...(정책사업목표)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이전
보육지원과	1	1	1	2	5	5	-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했던 1개 지표에 2가지 내용(지출액, 대상자수)이 함께 들어있어 지표 2개로 분리하여 성과표시
교육복지과	5	5	5	5	5	5	- 평생학습 업무가 민관협치담당관으로 이관되었으나 청소년직업훈련 부분은 교육복지과에 그대로 남아있어 정책목표 및 지표수는 변동없음
사회적경제과		2		2		2	- 일자리정책과가 사회적경제과로 부서명이 바뀌면서 생활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 업무 재분장
생활경제과	2		2		2		
(일자리정책과)	1		1		1		
세무2과	2	1	2	1	2	1	- 서민금융안정지원(정책사업목표)이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었음
교통행정과	2	3	5	6	8	7	- 교통지도과에 있던 자동차정비팀이 교통행정과로 이전되었고, 교통행정과에 있던 운수지도팀이 교통지도과로 이전됨에 따라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 수 변동되었음
교통지도과	2	3	5	5	6	7	
치수과	2	3	6	8	6	7	- 감사담당관에 있던 안전도시 만들기 지원(단위사업)이 치수과 정책사업목표로 이전되어 목표 및 지표 수 변동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부서의 개편이나 사업의 분화로 인해 변경된 사업은 다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적시하여 성과지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내용

Ⅲ.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내용

전년도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분야별, 부서별 조치내용 검사결과 민간위탁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침 수립, 예산전용액 감소(63%), 과다 설계방지 대책 수립, 세입금 결손처분 전 적극적인 채권확보, 과오납 발생 최소화 등 부서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되었음.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주관부서	해당부서
세입	세입금 결손처분 전 적극적인 채권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효결손 채납액은 주로 소액의 면허세와 재산세로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사실상 폐업한 사업자에 부과된 면허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일) 이후부터 독촉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상속 미등기된 재산세임. ○ 채납자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시효만료 전 5년간 적극적으로 채권확보코자 노력하였으나 전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시효결손 처분한 사항임. 	세무2과	세무1과 (세외수입) 세무2과 (지방세)
“	과오납 발생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오납 발생: 2015년 110건 3,059천원 2016년 166건 7,097천원 2015년 대비 과오납 금액이 132%로 증가하였으나, 면허세 법령등변경 특수요인으로 발생한 과오납 134건 6,218천원을 제외하면 32건 879천원으로 2015년 대비 과오납 금액이 71.3% 감소하여 과오납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음. ○ 2016년 발생 미환급금은 등록면허세(면허분) 1건 12천원으로 환급율 99.8%(금액대비)임. 	세무2과	세무1과 (세외수입) 세무2과 (지방세)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주관부서	해당부서
세입	수납을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 방법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태료납부 독려후 자동차 압류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부동산 압류 	교통지도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관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D/B전산 프로그램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교통정보과로 건의 (2016.07.08) : 부동산압류, 교부청구등의 현황·통계 파악 등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시스템 개선 요구함 		
세출	<p>체계적인 민간위탁사업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단체를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부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사업의 체계적 관리 체계 마련 - 지도점검 및 성과 지표, 사무 운영처리 절차 등을 반영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수립(2016. 11.) - 직원 및 수탁기관 대상 교육실사(' 16. 11, ' 17. 2) - 분기별 변동사항 관리 및 지도·점검 여부 확인 (2016. 70개 민간위탁 사무 100% 지도·점검 완료) - 조례 개정 및 관리지침 개정 계획(2017. 7~10.) 	기획예산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주관부서	해당부서
세출	<p>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p> <p>-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한 과다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결산액(집행잔액)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 심도깊은 예산심사를 통한 예산편성 추진 ☞ 행자부 선정 2016년도 지방재정집행 “우수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률 90.02% - 행자부 기준 83%대비 7%초과 달성 -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만 재원을 배분한 예산편성의 효율성 인정(3년 연속) 	기획예산과	
“	<p>합리적이고 타당한 예산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시 사업부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한 예산과목 설정 - 전년도 결산액 반영한 사업비 편성 - 전용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시행토록 안내 ○ 2015년 예산전용액 : 2,458,210천원 ○ 2016년 예산전용액 : 907,933천원 ▶ 15년 대비 1,550,277천원(63%) 감소 	기획예산과	<p>총무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청소행정과</p>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주관부서	해당부서																													
“	변경계약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내부통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 설계변경 대책회의 개최 (2016. 7. 26) ○ 과다 설계변경 방지대책 시행 (2016. 8. 22) - 당초 계약 목적과 상이하고 하자구분이 명확한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별도발주 원칙 -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선시공 금지) - 서울시에 사업예산 조기배정 지속적 건의 - 충분한 예산 확보 및 확한 물량 예측 노력 등 	재무과	치수과 건축과 토목과 생활경제과 청소행정과 어르신복지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도시경관과 자치안전과																													
“	연간 발주 계약건에 대하여 연 단위 경쟁 계약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부서별 검토시행 	재무과	총무과 자치안전과 청소행정과 세무2과 공원녹지과																													
“	계약의 투명성과 형평성 및 공정성 확보 - 청소용역 관련 특정업체에 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용역 수의계약 발주시 지적사항 전과 및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배분 권고 → 연도별 계약현황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회계 연도</th> <th colspan="2">S업체</th> <th colspan="2">Y</th> </tr> <tr>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2014</td> <td>17</td> <td>504,580</td> <td>6</td> <td>54,899</td> </tr> <tr> <td>2015</td> <td>17</td> <td>529,486</td> <td>4</td> <td>42,150</td> </tr> <tr> <td>2016</td> <td>11</td> <td>636,763</td> <td>3</td> <td>62,760</td> </tr> <tr> <td>2017</td> <td>6</td> <td>80,733</td> <td>3</td> <td>63,35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낙찰자 결정방법 변경(협상계약 → 적격심사)됨에 따라, 2017년 구청사 청소용역 등 3건 524,069천원은 타구 업체와 계약 	회계 연도	S업체		Y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17	504,580	6	54,899	2015	17	529,486	4	42,150	2016	11	636,763	3	62,760	2017	6	80,733	3	63,350	재무과	문화관광과 어르신복지 토목과 총무과 청소행정과 도시경관과 홍보담당관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회계 연도	S업체			Y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17	504,580	6	54,899																													
2015	17	529,486	4	42,150																													
2016	11	636,763	3	62,760																													
2017	6	80,733	3	63,350																													